



## 「예스실세금리 정기예금 특약」(구 외환은행)

### 제1조 적용범위

예스실세금리정기예금(구 외환은행)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**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한다.**

### 제 2 조 예금종류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합니다.

### 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
### 제 4 조 가입기간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3 개월이상 3 년이내에서 이율변동주기의 배수로 정하되 월단위로 한다.

### 제 5 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1,000 만원 이상으로 한다.

### 제 6 조 이율변동주기

- ① 이 예금에서 "이율변동주기"라 함은 거래처가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율을 변동 적용하는 단위기간을 말한다.
- ② 이 예금의 이율변동주기는 3 개월, 6 개월, 1 년으로 하며, 가입시 선택한 이율변동주기는 가입기간중에 변경 할 수 없다.

### 제 7 조 이자지급방법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이자지급식의 경우 3 개월, 6 개월, 1 년 단위로 지급하고, 만기지급식의 경우 만기일 이후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
- ② 이자지급식의 이자지급주기는 가입기간중에 변경 할 수 없다.
- ③ 이자지급방법은 가입시 선택하여야 하며, 만기지급식에서 이자지급식으로 중도 변경은 할 수 있으나, 이자지급식에서 만기지급식으로 중도 변경은 할 수 없다.

### 제 8 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의 이율결정일은 가입일, 갱신일 및 매 이율변동주기 도래일로 한다. **단, 이율결정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의 고시금리를 적용하며,**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의 금리로 한다.
-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이율결정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변동주기별 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.
- ③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.

### 제 9 조 중도해지

- ① 거래처가 최초 이율변동주기 도래전 지급청구한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.
- ② 거래처가 최초 이율변동주기 경과후 지급청구한 때는 매 이율변동주기 경과분에 대하여는 제 8 조②항에서 정한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고(이율결정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최초 도래하는 영업일 전일까지 지급),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

**제 10 조 분할해지**

- ① 이 예금은 최종 해지분을 포함하여 3 회 범위내에서 분할해지를 할 수 있다 .
- ② 만기일 이전에 분할해지하는 경우 분할해지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은 제 9 조에 따라 지급한다.

**제 11 조 계약기간의 갱신**

이 예금은 거래처가 예금가입시에 계약기간의 갱신을 신청하고 만기일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만기일(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)에 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다시 예치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거래처가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서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가입기간을 변경하여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가입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.

부칙

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 년 6 월 7 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.